

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27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7년 4월 23일

발 의 자 : 총무보사위원회

위원장 민태승의원외 3인

1. 수정이유

농촌지도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수정주요골자

○ 지소설치 조항을 삭제함. (안 제5조)

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를 삭제하고, “제6조 내지 제7조”를 “제5조내지 제6조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	비 고
제5조(지소설치)지도소의 업무를 <u>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</u> <u>동부지구 지소를 둔다.</u> 제6조 ~ 제7조(생략)	제5조(지소설치) (삭제) 제5조 ~ 제6조(현행 제6조 내지 제7조와 같음)	